

광주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가합59927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김민지

피고B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변론 종결2023. 4. 20.

판결 선고2023. 5.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1. 6. 8. 접수 제18551호, 제18552호, 제18553호, 제18554호,
제18555호, 제18556호로 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5세손인 D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재산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종중 대표자를 'E'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F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에 의해 2021. 6. 8. '2021. 4. 30.자 종중명칭·대표자·주사무소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칭을 피고와 같은 명칭(B문중)으로, 대표자를 'F'으로, 주사무소를 '나주시 G'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C의 5세손 D을 선조로 하는 동일한 종중이다. 즉, 원고가 1993. 7. 15. 이후 시제만 지낼 뿐 별다른 활동이 없어 원고 종중원 F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종중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2021. 4.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나주시에 원고와 같은 명칭의 종중이 많아 구별의 편의를 위하여 위 임시총회를 통해 원고 명칭에 공동선조인 'D'을 추가하여 피고와 같은 명칭으로 종중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경정등기를 할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원고의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2021. 4. 30.자 종중 회의록에는 종중 명칭을 'A문중'에서 'B문중'으로, 주사무소를 '나주시 H'에서 '나주시 G'로 각 변경하고, 대표자로 F을 선임할 것을 결의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② F은 2022. 9. 14. '원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거나 규약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2021. 4. 30. 원고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과 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한 후 무효인 위 임시총회 회의록과 규약서를 나주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 법원 2022고정63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3. 1. 6.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F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③ 피고도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B문중'이 원고와 동일한 종중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와 같이 경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등기명의인 표시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표상하는 동일한 표시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적법한 소집절차가 결여된 채 개최된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1), 그 잘못은 유죄판결 등을 첨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로써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경

판사이용석

판사최한결

별지

1)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원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F이 일부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2021. 4. 30. 임시총회를 개최한 다음 원고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후 그에 따라 마친 등기로서, 원인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